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상시적으로 한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아 생활하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고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도로나 공항 등에서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일련의 설비를 말하며, 재료의 공급, 가열, 혼합까지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아스팔트 혼합재를 생산하는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작업 특성



- 골재와 아스팔트를 연속적으로 건조·가열·혼합할 수 있어, 대규모 도로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량으로 안정적인 생산 가능
- 설치방식에 따라 정치식(고정식)과 피견인식(이동식)으로 구분되고, 현재는 대부분 정치식을 많이 사용

※ 주요 구조 및 기능



Cold bin

골재를 크기별로 저장하고 필요량만큼 배출하여 이송하는 장치



Dryer

골재를 고온으로 건조하고 가열하여 적절한 수분 상태로 만드는 장치



Hot bin

건조·가열된 골재를 크기별로 저장하고, 배합 설계에 맞춰 계량·공급하는 설비



Mixer

가열된 골재, 아스팔트 바인더, 필러 등을 정확한 비율로 혼합하는 장치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작업 시 주의사항

골재공급 장치와 계량 장치의 점검

- 1 골재 공급장치 및 계량 장치의 작동 상태와 컨베이어 골재 흘림 방지 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 2 컨베이어 벨트, 풀리, 롤러, 체인 등 회전체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신체 말림 사고 방지

공급 파이프 라인의 점검

- 1 믹서 내부에 설치된 라이너의 보온과 마모 상태 확인, 외부의 부식 및 손상, 변형 등 확인
- 2 믹서 고정축 설치 상태, 볼트·너트의 이완 또는 망실 유무를 확인하고, 아스팔트 공급라인의 석면 보온재의 파손 여부 점검

접진기의 점검

- 1 접진기가 견고히 부착되었는지 볼트·너트의 이완과 망실 등을 확인
- 2 먼지, 분지, 재 등이 외부로 분출되는지 확인

원동기의 점검

- 1 오일 누유 및 냉각수 누수 등을 확인하고, 각종 게이지로 오일양, 유압유량 등을 측정
- 2 시동 후 각종 진동 및 소음 유무 확인

필수 안전보건교육

노무제공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 대상** · 최초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건설기계 운전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법** · 작업 배치 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실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한 경우
· **전체면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 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 대상** ·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 이동식크레인 또는 타워크레인 사용작업 등
- 방법** · 작업 배치 전
- 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면제** · **교육시간 1/2 면제**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체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내용** · 공통사항 및 각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기계 관련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

- 산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제40조, 제86조, 제89조, 제91조 ~ 제93조, 제98조, 제99조, 제196조 ~ 제206조
- 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